

광주광역시시 주차장조례 증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법률 제5902호('99. 2. 8)와 대통령령 제16187('99. 3. 17)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조례로 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신고 (제2조1항)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삭제로 관련조례 개정
-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와 이용안내, 주차장 위치표지 (제4조)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 이용안내 표지, 주차장위치 표지 설치의무 규정을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설치자의 자율에 의하도록 하여 규제완화.
- 주차장의 설치 신고제 폐지 (제6조, 제1항)
주차장설치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법 개정으로 (법 제12조) 관련 조례 정비
- 영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

■ 검토보고

- 본 조례개정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차장관리 및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주차장법 제15조 제2항 삭제로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주차요금 중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관리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4조 주차장의 표지 중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와 이용안내 표지, 주차장 위치표지 설치의무규정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로 한정하였으며,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설치자의 자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 설치조항에 의하여 조례안 제6조 제2항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에 의거 조례안 제14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 본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 또는 보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